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표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학력 및 경력(자격·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기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에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호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거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신고 효력상실			
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신고효력상실			
다.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6호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효력상실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 외의 인명사고가		영업정지 6개월	신고효력상실		

발생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하 · 파손· 붕괴되거나 작 동 또는 기능 불량 등으 로 시설물 또는 제작물 의 주요 기능· 미관 또 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시켰을 때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에 미달한 경우	법 제24조 제 1 항 제 2 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개월	신고효력 상실
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 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신고말소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 나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 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말소			
2) 휴업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경고	신고말소		
바.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 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 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준	법 제24조 제 1 항 제 3 호	영업정지 6개월	신고효력 상실		

경우 사.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 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 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 1 항 제 4 호				
1)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신고효력 상실	
2)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 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신고효력 상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기준·방법 등(제37조 관련)

평가 항목	
1. 참여 기술자 능력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2) 전문화 정도 3) 업무 여유도 나. 그 밖의 추가 항목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나. 보유기술 다.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여부 라. 재정상태 건실도 마. 그 밖의 추가항목
3. 참여의향	

비고 : 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1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3.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2항제1호	30만원	50만원	80만원
4.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2항제2호	30만원	50만원	80만원
5.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6.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2항제3호	30만원	50만원	80만원
7.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48조제2항제4호	30만원	50만원	80만원
8.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4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9.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법 제48조제2항제5호	50만원	80만원	1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u>주민등록번호</u>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 ----- ----- ----- ----- ----- <u>주민등록번호</u> <u>또는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u> <u>인등록번호</u>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